

2022년 수출단체보험 가입 지원사업 이용 안내

회원지원실

2022. 2. 23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수출단체보험(2종 :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및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단체보험 개요

중소·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1)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구 분	지 원 내 역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년도 직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 중소/중견기업 중 회비완납 회원사* 신청/접수 시 실적증명 제출 및 회비완납기간 확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험가입비(200 달러) 중 전액 혹은 일부지원① 회비완납 11년 이상 : 보험료 전액지원② 회비완납 1 ~ 10년 : 보험료 80%지원(회원사 자부담 : 4만원)
대상 거래 및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중견기업 180일 이내적용위험의 종류 :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대 5만 달러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보상)
보험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상한도금액의 0.4%
보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직수출 실적 3,000만 달러 초과업체수출자가 무역보험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보험(포괄, 준포괄, Plus+보험, 단체보험, 농수산패키지보험) 이용업체(유효기간 종료 후 가입가능)

보상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소말리아, 리비아, 푸에르토리코, 시리아, 가봉, 아프가니스탄, 부탄,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예멘) 또는 이란에 수출한 경우 • 보험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초 만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결제가 지체되고 있는 수입자에 대한 수출거래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	--

(2)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구 분	지 원 내 역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회비완납 회원사 * 신청/접수 시 실적증명 제출 및 회비완납기간 확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입비(20 달러) 전액 (회비납부연차와 무관)
대상 거래 및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가공무역, 중계무역 * 결제기간 1년 이내 • 적용위험의 종류 :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보상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만 달러 (95% 보상)
보험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한도금액의 0.1%
보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이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또는 최근1년간) 직수출 실적 10만 달러 초과업체 • 수출자가 무역보험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단체보험(포괄, 준포괄, Plus+보험, 단체보험, 농수산패키지보험) 이용업체(유효기간 종료 후 가입가능)
보상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고위험 인수제한국가(소말리아, 리비아, 푸에르토리코, 시리아, 가봉, 아프가니스탄, 부탄,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예멘) 또는 이란에 수출한 경우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지원사항 요약표>

①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지원기준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3천만 달러 이하	
보상한도	50,000 USD (보상비율 : 중소기업 95%, 중견기업 90%)	
보험료/ 보험요율	20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4%)	
협회지원율/ 업체부담액	로얄 / 골드 (회비완납 11년 이상)	실버 (회비완납 1~10년)
	100% (전액지원)	80% (업체자부담: 4만원)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		
지원기준	작년 수출실적(직수출) 10만 달러 이하	
보상한도	20,000 USD (보상비율 : 95%)	
보험료/ 보험요율	20 USD (보험요율 : 보상한도금액의 0.1%)	
협회지원율	100% (전액 지원)	

< 신청제한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조기종료

2.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시행절차>

- ① 사업 시행공고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란 참조
- ② 가입신청 (회원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③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회원사)
- ④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협회→무역보험공사)
- ⑤ 보험심사 및 후보업체선정 (무역보험공사)
- ⑥ 후보완료 및 회원사 안내 (무역보험공사→회원사)
- ⑦ 심사탈락업체 자부담금 환불 (협회→회원사)

(1) 가입신청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일('22. 2월) ~ 12월(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종료)

※ 사업기간 중 접수 완료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지원 신청 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란에서 온라인 신청

※ 보험(2종) 선택 및 보험료 지원비율 확인 방법

① 수출실적 확인 → 이용가능 수출보험 확인 및 선택

- 가.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 수출 안전망, 중소중견 플러스
 - 나.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초과, 3천만 달러 이하 → 중소중견 플러스
-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빙 발급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참조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② 회비납부 연차 확인 → 보험료 지원률 결정

- 가. 회비완납 11년 이상 : 보험료 전액지원
 - 나. 회비완납 1 ~ 10년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80%지원(회원사 자부담 : 4만원),
안전망 보험료 전액지원
- * 회비납부 연차 확인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 참조
(바로가기 : <https://membership.kita.net/cert/mem/memCertReceipt.do>)

(2)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403-142428(예금주 : (사)한국무역협회)
* 입금자명은 반드시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안내받은 자부담액만 입금요망
* 자부담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증/입금증, 보험증권으로 증빙 대체)

(3)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 청약대상자 확정 : 지원가능 대상자 중 보험료 자부담금이 없거나(전액지원),
보험료 자부담금을 납입한 회원사
- * 자부담금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청약에서 제외
- 청약횟수 : 월 2회(매월 초 및 중순)

(4) 보험가입 심사 및 후보대상 업체선정(무역보험공사)

- 보험가입 심사 및 후보대상 업체 선정 : 약 2주 소요

(5) 후보완료 및 회원사 안내(무역보험공사 → 회원사)

- 후보안내 방법 : 이메일 및 팩스

(6) 심사탈락업체 보험료 자부담액 환불(협회→회원사)

- 자부담액 환불기한 : 심사결과 후 5 영업일 이내
- 환불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3. 문의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끝.